

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2005. 1. 7
조례 제2695호]

전부개정 2009. 6. 15 조례 제2916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0. 3. 2 조례 제2941호
일부개정 2014. 11. 20 조례 제3217호
일부개정 2018. 5. 2 조례 제3485호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수도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

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연천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 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5. 2>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로써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시설물 및 계량기 구경(13mm이하)을 사용하는 시설물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주거시설 : 아파트,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다.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라.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병원급 이상)

마.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등

바. 근린생활시설·업무·운동·위락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사.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아. 대단위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에 따른 산업용지조성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 등

자. 그 밖의 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 비용을 수도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도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 (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도물 양에 대한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연천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에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제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1. 20>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보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는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타 시설물의 설치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군수가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수도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3조 삭제 <2018. 5. 2>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 규정에 따른 수도관리자의 의무와 제반조치
2. 제6조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3. 제9조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정산
4. 제10조 규정에 따른 과오납 처리
5. 제11조 규정에 따른 공사시행
6. 제12조 규정에 따른 타 시설물의 이설 등
7. 삭제 <2018. 5. 2>

제15조 삭제 <2018. 5. 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5 규칙 제29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3. 2 조례 제2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과”를
“「수도법」 제38조 및”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분담금”을 각각 “원인자
부담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로복구비,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도로복구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 중 “사용료 또는 분담금”을 “사용료”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5의 과태료 항목 중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
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부한 시설분
담금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11. 20 조례 제3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2 조례 제3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0. 3.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도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도물 1m³ 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도물 1m³ 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도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침투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기존 수도시설 건설비용) + 추가사업비

수도계량기 구경	부담액	비 고
13mm	100,000원	개조시에는 구경별 차액을 징수한다.
20mm	250,000원	
25mm	400,000원	
32mm	800,000원	
40mm	1,300,000원	
50mm	2,000,000원	
75mm	4,000,000원	
100mm	7,000,000원	
150mm	17,000,000원	
200mm	27,000,000원	
250mm	54,000,000원	

1.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기존 수도시설 건설비용)은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에 대하여 계량기 구경별로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2.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

1.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사업종류	부 과 대 상 규 모	수 돛 물 수 요 량 산 출	비 고
주거시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세대수 $\times$ 2.8인 $\times$ 454ℓ (1인1 일사용량) $\times$ 1.35(첨두계수)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이상이거나 객실 15실 이상	건축연면적 (㎡) $\times$ 38ℓ (호텔 적용) $\times$ 1.35(첨두계수)	
교육연구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연 면적 1,500㎡ 이상	건축연면적 (㎡) $\times$ 20ℓ (사무 실적용) $\times$ 1.35(첨두계수)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1,000㎡이상 (병원급 이상)	건축연면적 (㎡) $\times$ 25ℓ (병원 적용) $\times$ 1.35(첨두계수)	
판매유통 시설	건축연면적 1,000㎡이상	건축연면적 (㎡) $\times$ 25ℓ (백화 점적용) $\times$ 1.35(첨두계수)	
근생시설 (업무, 운 동, 위락 시설)	건축연면적 1,500㎡이상	건축연면적 (㎡) $\times$ 20ℓ (사무 실적용) $\times$ 1.35(첨두계수)	
공장시설	건축연면적 2,000㎡이상	건축연면적 (㎡) $\times$ 20ℓ $\times$ 1.35(첨 두계수)	
대 단 위 사업시설	사업종류, 부과대상 규모에 따라 적용	인구수용계획1 인구수 $\times$ 454ℓ 또는 사업계획서상의 급수계 획량.일/톤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2,000㎡이상	건축연면적 (㎡) $\times$ 20ℓ (사무실 적용) $\times$ 1.35(첨두계수)	

(비고) 첨두계수 : 최대급수시의 여유율(상수도시설기준의 계수 적용)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sqrt{2gh}$ (오리피스공식)

- $Q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m³/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m³/hr)
C = 유량계수(Ca × Cv)	Ca = 수축계수(0.666적용)
Cv = 유속계수(0.97적용)	
∴ C = 0.666 × 0.97 = 0.64	
A = 면적(m²) = 10,000a(cm²)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²)
(수두 10m는 수압1kg/cm²에 해당)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

Q = 손실수량(m³)	A = 면적(m²)
L =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표 3]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제12조제1항 관련)

○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

구경 \ 구분	수도시설 좌 우 측	수도시설 하 단	수도시설 상단
D = 500mm이상	50cm이상	50cm이상	50 cm이상(보호층 설치요)
D = 500mm미만	30cm이상	50cm이상	30 cm이상(보호층 설치요)
비 고	-	-	횡단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구경별 심도이상 성토불가